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구룡면장



1. 공 고 명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8. 7. ~ 8. 22.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6.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 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 부여군 구룡면 총무팀(041-830-6482)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끝.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 연번 | 예치자 | 예치금액 | 보관의 종류 | 적요 | 비고 |
|----|-----|-------------|--------|---------------------------------------|----|
| | 합계 | 13,243,700원 | | | |
| 1 | 불명 | 12,745,560원 | 잡종금 기타 |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 |
| 2 | 불명 | 498,140원 | 잡종금 기타 | 지방세과오납환급금, 고용보험료환급금 및 원인미상 기타금액 | |